

대구지방법원 2016. 2. 17 선고 2015가단11014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피 고 1. A

2. B

변론 종결 2016. 1. 22.

판결 선고 2016. 2. 17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A는 원고에게 92,567,271원 및 그 중 91,397,390원에 대하여 2015. 4. 20.부터 2015. 6. 7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 A는 원고에게 92,567,271원 및 그 중 91,397,390원에 대하여 2015. 4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대전 서구 C 임야 992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4. 5. 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. 접수 제443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다. 기각하는 부분 :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%에서 연15%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시행령)이 2015. 9. 25. 공포되어 2015. 10. 1.부터 시행되었다. 이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연 20%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다.

### 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.

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. 11. 23.169,245,000원에 매각되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,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위 경매신청채권자(금호농업협동조합) 및 국세등의 채권이 위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피고 B에게 배당될

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,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창민

## 청 구 원 인

## 2. 구상금 청구

가. 피고 A 와 소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의 각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피고 A 는 소의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'국민은행'이라 합니다)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 A 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국민은행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습니다(각 제1호증의 1, 2 각 신용보증약정서, 각 제2호증의 1, 2 각 신용보증서 참조).

- 다 음 -

| 대출<br>내용 |        | 1약정          | 2약정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대출은행   | 국민은행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대출예정금액 | 50,000,000원  | 50,000,000원  |
|          | 대출과목   |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  |              |
| 보증<br>내용 | 보증번호   | E            | F            |
|          | 보증금액   | 45,000,000원  | 45,000,000원  |
|          | 보증일자   | 2014. 1. 29. | 2014. 1. 29. |
|          | 보증기한   | 2015. 1. 28. | 2015. 1. 28. |

나. 위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소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,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의 1, 2 각 신용보증약정서 참조).

#### 다. 손해금율의 변동

한편,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. 12. 1.부터 현재까지 연 12%입니다(갑 제3호증 손해금율 변경 통보 참조).

#### 라.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채권의 발생

(1) 피고 A는 사업운영 중 2015. 1. 14. 국세채납으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(갑 제4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), 원고는 2015. 4. 20. 국민은행에 45,698,695원(제1약정), 45,698,695원(제2약정)의 합계 91,397,39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(갑 제5호증의 1, 2 각 대위변제증서 참조).

#### (2) 기타채권의 발생

원고는 위 약정들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A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750,461원이 발생하였고, 미수위약금 419,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(갑 제6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).

#### 마. 구상범위

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청구할 구상금 채권은 총 92,567,271원(= 대위변제금 91,397,390원 + 대지급금 750,461원 + 미수위약금 419,420원)입니다.

#### 바. 소결

그러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92,567,271원 및 그 중 제1약정 및 제2약정에 대한 대위변제금 합계 91,397,39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. 4. 20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약정된 손해금율에 따라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